

2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생활 편의제고' 중점으로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 음영은 입법예고를 마쳤거나 입법예고 중인 과제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급여 대상을 현행 장기요양 3등급에서 등급외 A형의 일부까지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담부담 경감(월100~200만원→40~6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차등 적용, 보험료 하위 50%(400만원→200), 50~80%(400만원→30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3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확대, 본인부담률경감(암 환자:10→5%, 희귀난치성:20→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보장성 확대
4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 개정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
5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2종 수급권자 입원 본인 부담률 인하 및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입원본인부담율:15%→10%, 본인부담상한선 : 6개월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의료접근성 제고
6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를 통한 실·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현재)동일직장 2년이상 근무, 6개월 적용 ⇒ (변경)1년이상 근무, 1년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2만세대(58만명), 연간 163억원 부담완화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	자산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 개인별,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앙통합 급여관리체계 마련, 수급자 사후관리 및 부정적 수급 방지,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민원인 방문비용절감(697억원), 부정적 수급 방지에 따른 국가재정 절감(2,000억원), 업무 효율화로 행정비용 절감(532억원)
8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연령 일원화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변경	청소년보호법 개정	영화, 비디오, 게임등 문화부 소관 법률상 매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의무 및 처벌조항 적용기능으로, 청소년보호 강화
9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제도 개선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는 현행제도개선,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 예산 66억 절감 효과
10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도입	보육료 지원방식을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부모가 결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료 신청을 위한 기간단축(15일→5), 보육관련 포털구축으로 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1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재구축으로 고객친화적 R&D 관리(e-BMS(Business Monitoring System) 시스템 구축, 전자협약변경 시스템 구축, 행정서식 및 연구비비목 간소화)	R&D 관리 전산시스템 재구축	연구자 행정부담최소화로 행정비용절감
12	선진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구축	선진화된 평가 시스템 구축 (전자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전문성·공정성 확보, 평가위원 추천시스템 강화로 평가위원 논문 및 계획서 연계 후보추천기능, 연구자 DB정보 공유 및 전문가 pool 통합)	R&D 관리 전산시스템 재구축	평가/관리업무 체계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일관된 업무 처리)
13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강화 및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을 활성화함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대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성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효율성 향상 및 재정투명성 제고
16	기초수급자 에게 본인 급여내역 제공	기초수급자가 급여내역 확인 요청시 상세내역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급여내역확인서 발급	수급자 만족도 향상 및 알권리 확보
18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각 급여 또는 서비스를 1회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사도 통합적으로 실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통합신청 및 조사일원화 시행	민원서비스 처리속도 향상 및 민원인의 만족도 증대
19	기초생활보장소득·재산기준 개선	소득·재산 판정기준 객관화 및 간소화, 근로능력 등에 따른 추정소득 추계모형 개발, 재산산정시 매년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업지침 개정	전국단위의 기준 통일화 및 민원만족도 향상
20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등과 비상협조체계 갖추도록 개선	의료법 개정	실효성이 낮은 제도의 폐지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소지 제거 및 조산원 이용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가능
21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 및 처벌 완화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허용 시점 설정, 형법 등 타 법령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 합리화	의료법 개정	태아 성감별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 등 방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태아 부모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 보장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태아 성감별 금지사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08.7.31) 사항 반영		
22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 폐지	의료법상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 폐지, 행정처분만 존치	의료법 개정	이중처벌 등에 따른 불합리, 의료인들의 불만 해소
23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 등 설치 승인(신고) 절차 폐지	지부 또는 분회 설치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 폐지, 외국 또는 법정지역 이외의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의료법 개정	의료인단체의 서류 작성·제출절차 생략 및 행정비용 감소
24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중 '그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결격사유 대상을 명확화)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조항 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실효성있는 진단서 발급 비용 절감
25	마약류 관련 민원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 신청서, 몰수 마약류 공급신청서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처리기간: 미정) * 관련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처리 기간 마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처리기간 명시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의 편의 제공, 몰수 마약류 유통 활성화로 의료비용 절감, 마약 중독자에 대한 조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26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완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서비스 확대
27	건강진단 등 신고기간 단축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실시전 보건소의 신고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방지(신고기간: 3일→1일, 처리기간: 5일→즉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29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신청) 처리절차 개선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처리결과를 14일에서 7일로 개정, 수급권 상실 처리결과를 현행 30일에서 즉시 처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부양의무자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하면 되므로, 여타 부양의무자는 행정관청 방문 신청 불필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불편 개선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로 개정, 변경신고서 처리결과를 현행 30-60일 이내에서 7일로 개정,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현행 30일-60일 이내에서 7일로 개정		
30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 당시 배우자 관계 명시	신청서 작성양식에 배우자 관계를 추가하여 이의신청 등에 대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최초 신청상담 과정에서 신청자가 배우자관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
31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절차 간소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수급권자의 연금청구시, 접수 후 지급결정까지 평균 처리기간 현재 평균 36.4일 → 30일 이내로 단축, 방문 청구에서 무방문 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32억원)
3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고부담 완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경우 공단에의 소득신고 의무 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업장의 이중신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완화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공단 행정비용 경감
33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장기요양기관도 지정취소 전 단계에서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 사업자 부담 완화 및 장기요양기관 간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행정처분 완화로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이용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
34	지역암센터 지정서 교부 처리기간 설정	신청인에게 지역암센터 지정서 교부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설정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
35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완화	야외집회장, 지도자실, 휴게실, 물품보관시설 설치 및 설비기준 완화,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도록 완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36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신청처리기간 단축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 처리기간: 25일→18일, 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 2일→1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신청 처리기간: 60일→45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국민편의 증진
3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보고 주기 간소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보고 주기 간소화(반기별→매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업무 경감(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자체부담 경감)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38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최근 1년간"으로 완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39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의무에 대한 벌칙조항 개선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벌칙을 형벌 이전에 행정지도(시정명령)가 선행되도록 개선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유해업소 중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민원 해결 및 대국민의 행정서비스의 명확성 제고
40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완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중 상담 관련 분야 전공·학과 폐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응시자격 확대를 통한 다수의 경쟁촉진으로 자격 소지자의 역량 강화 효과 유발, 민원 감소 및 대국민 인지도 상승
4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예정지역 상 축적기준 삭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상 축적기준 삭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비현실적 규정 삭제,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업무 경감
42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위기청소년 직접 지원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가구 소득기준을 폐지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 강화(현행법으로 지원이 곤란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가능)
43	입양기관 변경신고처리절차 단축	처리기간을 7일→5일로 단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입양기관)의 편의 도모
44	아동학대통계 보고체계 간소화	매분기별 아동학대통계 보고자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	'09년 사업안내(지침) 개정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4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기간 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이수 기간 완화(배치후 6개월 이내→1년 이내로 변경)	'09년 사업안내(지침) 개정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교육이 현실에 맞게 운영 됨
4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권한 이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권한을 복지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자율성 확보, 지정 기간 단축 등
47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보육료 지원 신청서 제출시 제출서류 최소화	보육료 지원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전산확보 자료로 대체(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보육료 신청시 징구하는 증명서류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고)
48	배아연구기관 등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60일→30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60일→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49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완화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단축(종료 3개월 전→종료 1개월 전)	보건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연장신청 기간 제한완화 및 인증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관련 연구자 및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경감
50	배아·유전자 관련기관 등록·지정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지정·등록 변경신고시 수수료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51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편의 제고	장애인등록증 반환장소를 가까운 동사무소 및 우체국, 경찰서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 업무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 강화
52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Negative 방식 도입	안전성 우려 성분 등을 배합금지 원료를 규정하여 기존의 Positive List 방식을 Negative List로 개선	화장품법 개정	화장품 제조·수입에 신제품 개발을 촉진
53	국민건강보험 임의비급여 개선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별도산정,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 근거 마련, 비용징수 불인정 급여 기준 개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완료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호하여 국민의 의료권 보장
54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금연·비만클리닉 등 민간서비스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건강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시장을 조성하여, 국민의 원활한 건강서비스 이용과 건강수준 향상 달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건강산업의 발전 토대 형성
55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경제성·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 후 법제화 추진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 시장 활성화
57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	이·미용사 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 편의 개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전국 어디서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민원인 편의 대폭 개선
58	무단폐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요건 완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영업신고관청이 확인한 경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 도모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59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장애인은 발급받은 장애인단서를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 제출, 장애등록 완료(1회 방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으로 장애인의 불편 해소(행정기관방문:2회→1회)
60	간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간급지원 위기인정 요건 완화 및 지원종류 확대	간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간급지원 위기인정 요건 및 지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
61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증가 보고 기간 완화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증가 보고기한 명확화: 지체없이 → 7일 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법인의 임원선임 및 재산증가보고 기간을 구체화(7일)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 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성 확보
62	일반주거지역 내 의료기관에 부설된 장례식장 설치 허용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 설치된 장례시설 및 향후 설치되는 장례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주거지역 등에 장례식장 설치 합법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주거지역내 기설치된 장례식장이 합법화되어 장례식장 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국민 불편 예방
63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위탁급식업자가 '출입·감사 등 영업정지처분을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완화하여 타 식품접객영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위탁급식 영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64	식품 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 폐지	식품 등 수입시 수수료 부과 폐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타 기관과의 행정 형평성 확보 및 식품수입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65	식품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명확화	종래 건강진단 시기에 대한 규정 미비(영업자는 영업개시전에, 종업원의 경우는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영업자 및 그 종업원 등의 법령 해석상의 오해를 최소화, 식품관련 분야 종사자의 사전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66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관광호텔의 경우 야외영업장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양질의 식품접객 서비스 제공 가능
67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 개선	수입식품의 경우 등록전 사전 현지 확인 의무화로 해당 업체 경제적 부담 가중,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경우에는 현지 실사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수입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전 확인 등록 활성화로 식품 안전 확보 용이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68	HACCP 관련 교육훈련 시간 완화	교육시간을 단축(신규영업자 4시간→2시간, 신규종업원 24시간→14시간, 정기교육 연8시간→4시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과도한 교육시간 지정으로 인한 업무지장 및 교육 효율성 저하 등 방지, 영업자 및 종업원의 편의 증대
69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업무 지자체 이양,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 후 지자체에 이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인들의 영업허가 등 편의 제고, 처리 기간 단축 등 효과도 기대
70	외국인에 대한 간급지원 확대	간급지원의 외국인 예외적용 사항으로 화제·범죄·천재지변 추가(지침) 간급복지지원법에 외국인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간급복지지원 지침 개정(안료-'08.10), 간급복지지원법 개정	범죄등에 의한 선의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급복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이미지 제고
7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편의 제고	온라인 보수교육 병행(집합교육 외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도입 예정)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 지침 마련	보수교육 방법의 다양화로 원활한 보수교육 시행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 기대
72	사회복지시설 지정후 원금의 사용범위 완화	후원금 모집·관리 등 비용으로 후원금의 15%까지 사용토록 변경	사회복지시설관리내내 개정	기부문화에 대한 홍보 및 모금활동 강화로 기부문화 확산에 따른 후원금 증가
73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 기준 합리화	놀이터 면적 기준을 현행 [정원×면적]에서 [동시간대 실제 놀이터 이용 아동수×면적]으로 변경, 옥내놀이터의 설치 가능 총수를 비상재해대비설비 기준에 맞추어 2층 이상으로 완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놀이터 부지 확보 곤란으로 보육시설을 확대하거나 신축하기 어려운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74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 완화	영양사 국가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전공, 학과명칭이 아닌 지정교과목 이수여부로 변경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을 지정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응시기회 확대
75	출장검진시 출장검진 계획서 폐지	출장검진 3일전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출장검진계획서' 폐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출장검진에 따른 중복 서류 제출 방지 효과
76	장애인생산물 인증 기준 완화	장애인생산물 인증 심사기준 중 '판매확대 노력여부' 삭제(상위법령의 인증요건 및 장애인생산물 인증제의 취지와 무관한 심사기준)	장애인생산물 인증기준 관련 고시 개정	인증 획득과정에서 시설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77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긴급지원 대상자의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교육지원 신설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	긴급지원 가구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
78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대상 확대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보건소 또는 정신병원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정신보건센터를 대상에 포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79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주기 완화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횟수를 연 1회로 완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개정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를 매반기에서 연 1회로 개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80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간소화	후원금 영수증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토록 개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도의 서식 삭제로 행정 비용 절감 및 관련 영수증 수령을 위한 관청 방문 횟수 감소
81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서류작성 의무 완화	불필요한 서식 삭제 및 계약관련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개정	불필요한 서식 삭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계약관련원칙의 일원화로 업무편의성 도모
82	안전성·유효성심사 적합 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	심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로 단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민원 만족도 제고, 의료 기기가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83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현행 정기심사 미이수자의 경우 판매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판매한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품목 제조·수입 정지 6개월 행정 처분 조치, 동 규정을 개선,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3월로 감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도모
84	의료기기의 품목관리 기준적합인정 미이수자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원화	현행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 미이수자로 의료기기 판매자의 경우 업무 정지 6개월(개별규정제8호 바목) 이외에도, 다른 규정으로 당해 유형 품목 허가 취소 또는 제조 금지 처분 규정(개별기준제 9호 가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혼란 방지, 행정 낭비 소지 제거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해당 규정을 일원화(개별기준제 9호가목 삭제, 제8호바목으로 통일)		
85	자녀수에 따른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대상 확대	훈령개정 (가족보건업무규정)	정·난관복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도 복원수술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
86	피임시설 등 관련규정 폐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규정된 피임시설 대상자, 시설비 청구 및 지급 등은 개인의 의사결정 등은 법규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삭제	훈령개정 (가족보건업무규정)	민원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 등
87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국내취업 희망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 처리기간 단축(14일→7일) 및 제출서류 감축(12종→9종)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부기(지침) 개정	구비서류 감축: 최소 12종 → 9종, 민원처리기간 단축: 14일 → 7일
88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의 약가 산정절차 간소화	현행 약가 산정 절차 중 건보공단 협상 과정 생략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약가 절차 최소 60일 단축 가능
89	실거래가 조사에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제한기간 단축	현행 5년간 원가보전 금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으로 저가필수 약제에 대한 보호 가능
90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재평가기준 개선	현행 A7평균가 기준 약가 재평가 방식으로 국내 개발신약 및 개량 신약이 외국 오리지널보다 불리하게 평가 되는 역차별 발생, 재평가 기준 개선(특허를 가진 국내신약 및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 신약: 원가 고려방식,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지 않은 개량신약도 필요시 오리지널 인하율과 연동하여 재평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형평성 있는 재평가 기준 마련으로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91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완료)	관청방문 횟수 감소(약400회/연), 행정비용 절감(우편료 152만원/연)

<표 계속>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92	사망진단서 서식에 본 적란 삭제	사망진단서의 본적지 기재란 삭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불편해소 및 법적 실효성 강화
93	말기암환자 정보 등록의 간소화	eVelos 시스템에 말기암환자 정보 입력사항중 필수항목만 입력하도록 조정하여 호스피스 기관에 안내, 정보 입력 문항을 재검토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에게 꼭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수정·보완	'09년도 호스피스지원 기관 안내 지침 개정	말기암환자 정보 입력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 낭비 방지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발굴하여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94	암검진기관의 유소견자 보건소 동시통보 절차 폐지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 본인과 해당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던 것을 보건소 통보는 정보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행정부담 경감 * 유소견자 확인절차를 일원화: 검진기관(청구)→건보공단(심사)→국립암센터(정보시스템)→보건소(결과확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개정	암검진기관의 유소견자 동시통보에 대한 행정부담 경감으로 불필요한 행정인력 소요 및 부담 경감
95	암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 제출 폐지	암검진에 대한 '출장검진계획서'를 폐지하고 건강진단·순회진료등을 포괄하는 '건강진단등신고서'로 관리 일원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개정	암검진기관 및 보건소의 행정부담 경감으로 불필요한 행정인력 소요 및 부담 경감
96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수납기관 지정 폐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수납기관을 자유롭게 정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개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민원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 이용시 수수료등 절감 효과 부과권자 위주의 행정에서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
97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등 통지기간 단축	과징금부과권자는 과징금납부기간 연장등 허용 여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현행 10일 이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민원인이 납부기간 연장등 허용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준비 등 편의 도모